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5 발의연월일: 2020. 6. 17.

발 의 자:이종성·김영식·김석기

한무경 • 이종배 • 임이자

이태규 · 박덕흠 · 김승수

정점식 · 신원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효용을 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는 피부착자의 관리·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업무 과중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 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제5조제4호의2 및 제6조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 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교도소장 등) ① ~ ⑤ (생 | 제3조(교도소장 등) ① ~ ⑤ (현 |
| 략) | 행과 같음) |
| <u><신 설></u> | 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
| | 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
| |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
| |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 |
| | 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
| | 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 |
| | 를 수행한다. |
|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
| 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 | 법경찰관리) |
| 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 |
|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 |
|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 |
|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 |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
|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 | |
| 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 | |
| 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 | |
| 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 |
|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 | |
| 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 |
| 수행한다. | |

1. ~ 4. (생 략) <u><신 설></u>

5. ~ 53. (생 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7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4. (생 략)
<<u>신</u> 설>

5. ~ 50.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 |
| 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 |
| 지의 국가공무원 |
| 5. ~ 53. (현행과 같음) |
|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
|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 |
| 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
|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
| 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
|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
| 파성된 피구작자의 팀의 |

5. ~ 50. (현행과 같음)